

# ‘학교도 일상회복’...새 학기 마스크 벗고 정상 등교

발열검사 의무→ 학교 자율 방침  
코로나 확진, 등교중지 출석 인정  
정기 방역·불시 현장점검 실시도  
교육계 “교실 일상회복 지켜져야”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광주·전남 내 모든 학교가 변화된 학교 방역수칙에 맞춰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교육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상회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토대로 학교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학생, 학부모의 방역 피로감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지난달 폐지된 마스크 실내 의무 착용은 자율화된다.

또한 2일부터 등교 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한다. 급식사에서 발열검사나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고했던 자가진단 또한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으로만 제한해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자가진단 앱 참여를

독려한다. 감염위험요인이 있다고 자가진단 앱에 등록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에 대해서도 기준처럼 출석이 인정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개학 후 2주간(2일-16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

다. 이 기간 동안 학교는 방역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390명, 전남도는 2300명의 방역전담인력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확보해 보급한다.

각급 학교는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강화,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5회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상태를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모든 학교가 대면수업을 실시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되,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재학생 확진 및 격리 비율에 따라 비교과활동 제한,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돼 예전의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도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켜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가람·김혜인 기자

## “대중제 전환 후 회원 계약 해지한 골프장 배상해야”

회원 지위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사정 변경 해지 인정 안돼”

골프장 운영사가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한 기존 회원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최근 열린 A씨 등 67명이 전남지역 한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골프장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원고들의 우선 예약 권리와 정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A씨 등 원고 67명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골프장 정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회원 자격으로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우선 예약·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누렸다.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 예약금 회원제에서 대중제(회원

전원 동의 필요)로 운영 방식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2020년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회원권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변제 공탁하고 2021년 1월 회원 대우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회칙상 운영사가 회원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없음에도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하고 자격을 강제로 상실시킨 점, 운영사가 경영상 판단(재산세 증가세 피함)에 따라

대중제 전환을 추진한 점, 회원 계약 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8일 기준 원고들을 포함해 정회원 108명이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아 회원제 골프장 기능을 잃지 않은 점,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골프장 호황으로 영업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운영사인 피고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원고들이 회원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에 대한 회원 우대가 기존 회원들(입회비 반환 뒤 스스로 지위 포기)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사정 변경에 따

른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영사는 원고들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한 사용료(주중 13만 5000원·주말 16만5000원)를 적용했다. 원고들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원고들에게 비회원이 대비 주중 55.6%, 주말 47.1%의 사용료를 적용해야 한다. 운영사는 원고들이 회원가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급했던 것에 대한 차액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운영사가 원고들에게 회원가를 넘어서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위반 1차례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양가람 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